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세청 등의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임의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61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세청 등의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7일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 징수제도는 2011년 징수제도 통합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당해 연도 실 보수와 시차가 존재하고, 사업주는 국세 소득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따라서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 및 보수신고 편리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확대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 등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 10 등).

Ⅲ. 검토의견

1. 국세청 등의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업주가 국세청장 등에게 소득정보를 신고한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16조의10 제5항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 ----- 제6항-----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 ④ (생략)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제1항, 제2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⑧ (생략)	<u>하고 사업주가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재 사항의 누락, 오류, 수정 등의 사유로 보수총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 제6항까지----- ----- -----. 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와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각각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매월 부과됨.

그러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별보험료는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매년 3월 15일까지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

이와 같이 월별보험료를 월평균보수 기준으로 산정한 다음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이유는, 현행법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신고 주기가 반기라서 월별보험료 부과와 실제 보수 확인 사이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임.

1) 법률 제19196호

개 정 전	시 행 예 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u>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u>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u>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 ----- ----- ----- ----- ----- ----- ----- ----- ----- ----- ----- ----- ----- ----- <u>자</u>----- ----- ----- <u>그 소득</u> <u>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u> <u>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u> <u>기간 종료일을 말한다)</u>이 속하는 달의 <u>다음</u>

가 현행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됨에 따라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가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할 국세청장 등 세무당국에 신고한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재 사항의 누락·오류 등의 사유로 보수 총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세무당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과에 활용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이중 신고(국세 소득신고, 보수총액 신고) 부담을 경감하고, 보

1. <u>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u> 2. <u>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u> <신 설> ② ~ ⑤ (생략)	<u>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u> 1. <u>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u> 2. <u>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u> 3. <u>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u>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수신고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한편, 현행법 제40조²⁾는 공단이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근로소득자료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그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보수총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538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고용보험료의 지원,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료의 정산,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연체금 또는 징수금의 징수 등을 위하여 근로소득자료·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③ (생략)